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안 제57조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 대한 규정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 삽입

나. 근거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7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7. 10. 27 ~ 11. 15 (20일간)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74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략) 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 ----------. 1.~3. (생 략)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 ---------- ---------- ----------.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개정전]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개정2006.1.11>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에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후]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개정2006.1.11>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에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개정 2006.8.17〉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